#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06-053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4. 12.

# 주 문

1.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과 태 료 : 3,00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 이 유

##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 기관으로,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 <del>등</del> 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명)

#### Ⅱ. 사실조사 결과

##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이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침해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조사('20. 4. 17. ~ '22. 4. 5.)를 진행하여, 피심인의 개인정보보호 법규위반행위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2. 행위 사실

##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 (유출 경위) 피심인은 '19.11.5. ○○ ○○ ○○ 감정평가 및 ○○ 관련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민원인이 아닌 제3자에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전자메일로 오발송하여 개인정보 유출

# ○ (유출 항목 및 규모) 신고인의 성명·주소·민원내용, 신고인 부친의 성명

# ○ (유출 경과 및 대응)

일시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2019. 11. 05.	신고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 이메일로 오발송		
2020. 01. 31.	신고인, 피심인측 감사실에 민원 제기		
2020. 02. 03.	감사실 담당자가 신고인과 통화(별도 조치 없었음)		
2020. 04. 14.	오발송 이메일 수신자에게 해당 메일 삭제 및 폐기 요청		
2020. 04. 17.	신고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침해신고 접수		
2020. 05. 21.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유출 사실 통지		

#### 나.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 1)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20. 1. 31. 신고인으로부터 유출 사실을 제보받아 제3자에게 개인정보가 오발송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20. 5. 21.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유출통지를 한 사실이 있다.

##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 4. 5.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2. 4. 20.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 Ⅲ. 위법성 판단

#### 1. 개인정보의 유출 통지 의무를 소홀히 한 행위

####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34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처리자의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를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해당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알려야 하나, '20. 1. 31.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20. 5. 21.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피심인의 행위는 보호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판례(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개인정보를 인지한 경우 개인정보 누출(유출)로보고 있으며,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 제정) 제25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

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권한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를 개인정보 유출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개된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추가 동의없이 수집·이용·제공이 가능한데, 정보주체와 제3자가 친분 관계가 있다고 하여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까지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유출 정보에는 공개 정보(성명·주소) 외 민원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는 만큼 권리 침해가 없었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 Ⅳ. 처분 및 결정

#### 1. 과태료 부과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제34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인 600만 원을 적용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21호) 제63조 [별표 2] >

		과태료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어.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8호	600	1,200	2,400

#### 나. 과태료의 가중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별표2] 가중기준에 따른 과태료를 가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금액을 유지한다.

#### 다. 과태료의 감경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과태료의 감경)는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감경기준(당사자 환경, 위반정도, 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 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 사업규모,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사업 규모,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경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위반행위를 중지하는 등 시정을 완료한 점, 조사 기간 중 일관되게 행위 사실을 인정하 면서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금 액의 50%인 300만 원을 감경한다.

## < 과태료 부과기준(행정안전부 기준('19.10.7.)>

유 형	내 용	기 준
대상 규모	중·소기업	감경(50%)
내용·정도	경미사항 3/10 미만 위반*	감경(50%)
	중요사항 7/10 미만 위반*	가중(50%)
위반자 유형	장애 / 심신미약자 등	감경(50%)
태도·노력	부주의 등 + 피해없음	감경(50%)
	검사 전 시정 / 해소	감경(50%)
	의견제출 기간 시정 / 해소	감경(25%)
	은폐·조작 위반	가중(50%)
	검사 거부 / 미시정	가중(50%)

결과	피해자 10만명 이상	가중(50%)	
	2차 피해 발생	가중(50%)	
	3개월 이상	가중(50%)	
기타 필요시	기타 필요시	감경	
	기타 필요시	가중	

# 라. 최종 과태료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가중·감경을 거쳐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과태료 산출내역 >

과태료 처분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위반조항	처분 조항	기준 금액(A)	가중액 (B)	감경액 (C)	최종액(D) D=(A+B-C)
제34조제1항(유출 통지 의무 위반)	법 제75조제2항제8호	600	1	300	300

#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34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과태료)제2항 제8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피심인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이 과태료 재판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

# 2023년 4월 12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